kocca 발간보고서 12-09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2012. 11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CONTENTS

I. 콘텐츠의 특징과 불공정거래의 원인
1. 콘텐츠 및 콘텐츠 거래란? 6
2. 콘텐츠 거래의 구조와 특징 7

II. 콘텐츠 분야별 불공정 거래의 예
1.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분야 10
2. 음악, 공연 분야 11
3. 방송 분야 12
4. 온라인 게임 분야 14
5. 인터넷 포털 등 지식정보 분야 15
6. 출판 분야 16
7. 광고 분야 17

III. 불공정한 콘텐츠 거래는 어느 법에 위배되나?
1. 불공정한 콘텐츠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들 20
2. 주요 규정 22

IV. 콘텐츠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1. 대금관련 주의사항 28
2. 목적물 관련 불공정거래 36
3. 거래상대방 관련 불공정거래 42
4. 기술 관련 불공정거래 46

콘텐츠의 특징과 불공정거래의 원인

- 콘텐츠 및 콘텐츠 거래란?
- 콘텐츠 거래의 구조와 특징

1. 콘텐츠 및 콘텐츠 거래란?

콘텐츠(Contents)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콘텐츠는 출판, 영화, 비디오, 음악, 방송, 공연, 광고,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등의 여러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데, 콘텐츠가 가진 다양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현재 여러 콘텐츠들이 제작·유통 또는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를 제작·유통·이용 또는 거래하는 산업을 콘텐츠 산업이라 부르는데, 최근 들어 콘텐츠 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기반 내지 문화 산업이자 친환경 녹색성장산업으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한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2002년에 「온라인디지털산업발전법」을 거쳐 2010년에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들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한편, 국가로 하여금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콘텐츠 사업자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그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도 각종 콘텐츠와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콘텐츠 거래의 구조와 특징

산업구조 측면: 제작단계와 유통단계의 사업자 규모가 다르다

콘텐츠 분야는 여러 면에서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조금 다른 산업적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크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계와 제작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유통시키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작 단계에서는 엔지니어나 디자이너 등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중요해서 노동집약적 특징을 가진 반면 대개의 경우 진입을 위해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진입장벽이 낮아서 주로 소규모의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수시로 콘텐츠 제작 분야에 뛰어들곤 합니다.

반면에, 유통단계에는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런 설비는 통상 대규모의 자본 동원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진입장벽도 높은 편이어서 유통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나 시장의 구조에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거래구조 측면: 콘텐츠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상 지위에 우열이 존재한다

제작된 콘텐츠가 일반 소비자 내지 이용자(영화산업에서는 상영관)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유통(영화의 경우에는 배급)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점에서 유통단계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자나 이용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작단계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게임이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경우에는 유통단계에 진출해 있는 사업자(퍼블리셔)가 상품의 모델을 직접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단계에 자금을 지원하여 콘텐츠가 출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자의 설비와 플렛폼이 콘텐츠 유통업자의 설계에 전속되는 결과가 되고, 제작자가 다른 거래처나 경로로 판로를 전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계약과정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에 대해 원하지 않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품으로서 콘텐츠의 특징: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기 어렵다

한편 콘텐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작하는 과정에서 노동 및 기술집약성을 띠는 까닭에 소요비용이 그리 크지 않은데 반해, 일반 공산품에 비해 제작된 콘텐츠의 상품성과 매출액을 예상하기 곤란한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작된 콘텐츠의 적정가격을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유통업자가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작자들이 보유한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이 싼 값에 넘겨지거나 콘텐츠로부터 큰 이익을 남더라도 그 수익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불공정 거래관행이 형성되기 쉬운 콘텐츠 거래 환경

콘텐츠 거래에서는 제작과 유통의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간 지위의 차이와 불균형이 존재하며, 자금 및 기술의존도, 경제력 및 교섭력 측면에서 우월한 사업자들이 거래관계의 계속성, 수직성, 전속성을 토대로 하여 불리한 지위에 놓은 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콘텐츠 분야별 불공정 거래의 예

-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분야
- 음악, 공연 분야
- 방송 분야
- 온라인 게임 분야
- 인터넷 포털 등 지식정보 분야
- 출판 분야
- 광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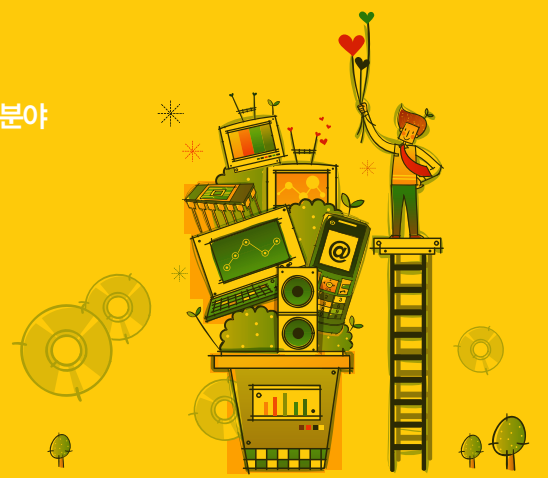

1.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분야

국내영화산업에서는 영화제작사와 창업투자사, 배급사 등의 수직구조 하에 투자 및 배급사의 영향력 및 거래상 지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상영업자나 배급사가 영화제작사나 상영관 등에 대해 불공정거래 관행 특히, 투자금에 대한 이자 및 지분의 불균형적 배분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사례

영화상영업자가 영화배급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영화를 조기종영하거나, 계약상 부율(수익분배비율)을 변경하거나, 상영관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는 무료초대권을 배급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대량으로 발급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명된 사례가 있음.

영화배급업자가 기업경영상의 이유나 혹은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약 2년의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영화상영업자들 중 특정 영화상영업자에 대하여만 영화배급을 거절한 경우나, 영화배급업자가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를 대상으로 케이블TV 방영권을 공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경쟁사업자이자 비계열 회사인 영화방송채널사업자에게는 케이블TV 방영권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문제된 예가 있음.

2. 음악, 공연 분야

음악산업은 작곡가, 작사가 등 음반제작자, 연주자, 가수, 프로듀서, 음원콘텐츠 공급자, 음반제작사, 방송사나 연예기획사, 인터넷포털 등 다양한 주체와 층위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개인제작자, 가수 및 연주자들이 대규모 음악 유통업자와의 사이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음악 및 공연산업에서 주로 문제되는 행위들로는 연주자와 관련하여 연주료의 미지급, 연주대상곡명 및 곡수의 미고지, 음원 등 디지털콘텐츠 판매 관련 수익배분, 수익배분시 정산자료에 관한 해석, 재녹음 및 추가작업 등과 관련한 불공정 계약이나, 프로듀싱계약과정에서 음악감독료의 미지급 내지 지급지연, 인도지연 등 계약이행지체, 표절 등 제3자와의 저작권 분쟁시 책임부담, 뮤직비디오나 무단 편곡 등으로 감독의 저작권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입니다.

실제사례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음반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연예인과 연예활동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첫 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내지'조연급이상의 배역출연으로 첫 번째 작품의 데뷔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등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위약시 손해배상액을 향후 예상이익에 비추어 과다하게 설정한 경우가 문제되었음. 이는 계약만료 후 당해 연예인의 활동기회를 제한할 수 있어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아울러 계약상 손해배상액에 관한 규정이 동종업계의 거래내용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에도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방송 분야

국내 방송산업이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접어들면서 방송프로그램이 종전의 자체제작 방식에서 외주제작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고, 산업인력 구조도 정규직 스태프(근로계약) 중심에서 프로젝트별 프리랜서 중심(도급계약)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들간에는 프로그램 제작비산정상의 부적절성, 방송사에 의한 제작시설 및 인력사용의 강제 및 부당한 요금부과, 추가제작비 발생시 부담의 전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문제, 협찬 및 간접광고, 지체상금 부과,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와 방송극작가 사이에는 원고료의 지급지연 및 미지급, 방송 횟수를 늘려서 추가제작할 경우 적정 원고료의 책정을 거부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의 2차적 사용(DVD제작, 해외판권)시 수익배분의 문제, 혹은 프로그램의 경연출품시 수상주체, 작가변경에 따른 원고료지급 문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 및 횟수변경, 방송중단 내지 폐지시의 급여, 원고인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불공정 계약들이 문제됩니다.

또한 방송사와 방송스태프 사이에는 스태프에 대한 급여의 지급지연, 하도급시 업체직원의 인건비 미지급, 안전배려의무 미준수로 인한 사고발생시 책임부담, 보험가입부담 주체, 업무수행으로 인한 진행비, 경비 등의 증빙 미지급, 계약의 일방적 해제 및 해지 등과 관련된 불공정 계약들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실제 법위반 사례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자주 연루되고 있습니다.

실제사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신규 프로그램 공급계약(소위 런칭계약)을 체결하면서 런칭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은 무료로 하고, 신규채널 런칭에 따른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무료로 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홍보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런칭비'를 징수하는 것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의 광고지면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PP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거래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상품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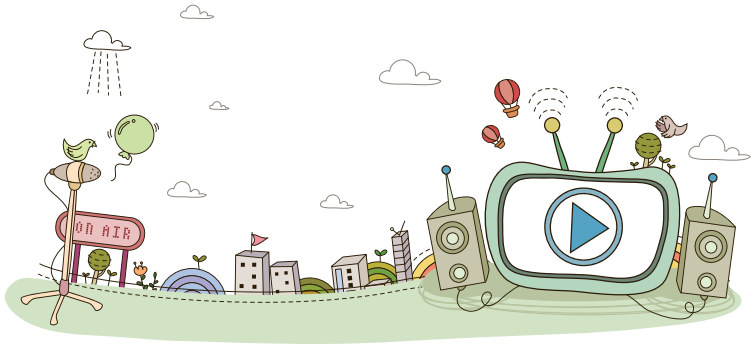

4. 온라인 게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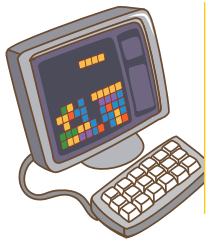

온라인 게임산업은 유독 영세한 제작사와 상당규모와 자본력을 갖춘 퍼블리셔 간에 지위의 격차가 커서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 개발되기 까지는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요구되므로 제작사의 입장에서 수익창출 시점이 되기 전에 자금난 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악용하여 기술에 관련된 불공정 계약이 체결되거나, 대금지급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제공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사례

온라인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 등을 PC방에 판매하면서 PC방 요금 과금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개별 정량제를 없애고, 이전제품과 새로 출시된 온라인 게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량제 상품을 출시하였음. 반면 양 제품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개별정량제는 두고 있지 않았음. 이러한 행위는 전형적인 끼워팔기식 거래로서 인기게임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를 원치 않는 비인기제품 혹은 신규제품을 사실상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게 됨.

5. 인터넷 포털 등 지식정보 분야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뉴스제공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 지식정보 서비스업은 콘텐츠산업 가운데도 향후 발전속도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이지만 동시에 주로 인터넷 포털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관행 들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인터넷 포털의 경우 콘텐츠공급자와 이용자의 중간적 위치에서 이용자의 트래픽수를 기반으로 광고수익을 올리는 한편, 이를 위해 각종 콘텐츠제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종종 문제되고 있습니다.

실제사례

무선인터넷망을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으로부터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빌려 쓰는 망개방 사업자와 "무선인터넷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후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 관련 정보이용료의 청구 및 수납대행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망개방 사업자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이동통신사업자가 계약서상 어떠한 합의도 없이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중 특정요금제 가입자에 대하여 망개방 사업자로부터의 콘텐츠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음. 이 같은 행위는 관련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었음.

인터넷포털 사업자가 게임콘텐츠 개발·공급업체와 온라인게임 콘텐츠 제공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상 내용으로 자신이 중소게임업체인 상대방에게 게임개발비 및 게임서비스 제공수익의 40%를 지급함과 아울러, 특정한 경우에는 모든 소스코드와 운영메뉴얼 일체를 야후코리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자신에게만 당해 게임을 독점공급 하도록 요구한 행위. 비록 계약상으로는 합의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소스코드 등의 무상제공관련 행위는 당사자간 합의보다는 지위불균형에 기인한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포털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됨.

6. 출판 분야

출판물의 유통구조는 최근 들어 off-line의 중소서점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대형서점, 대형마트 및 on-line 판매방식으로의 전환이 활발해지면서, 출판물제작업자들의 교섭력과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종전보다 노골화되고 있는데, 출판산업의 특성상 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점한 서점들이 가격인하의 부담을 출판업체에 전가하는 방식 등으로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사례

반값할인과 같은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면서 출판사로 하여금 간행물과 학습지의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관행이 문제되었음. 도서가격을 중심으로 경쟁구도는 표면적으로 가격경쟁과 소비자권익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전적으로 출판업계에 지우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7. 광고 분야

광고는 대개 광고주가 광고회사에 광고제작을 의뢰해서 기획안을 확정하면, 광고회사가 이를 다시 광고제작회사에 재의뢰하는 하도급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법에서 정하는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금을 현저히 낮게 책정하는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조위탁 혹은 용역위탁에 있어 원사업자는 제조위탁을 할 때 또는 용역을 위탁을 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혹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를 교부해야 하며, 당초의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실제사례

대형 광고회사가 수급사업자(광고물 등을 제작하는 중소사업자)에게 홍보영화 제작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 수행 중 혹은 용역 업무 완료 직후에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 계약서와 같은 서면교부 지연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즉 지연교부를 인정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으나, 지연교부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실무자의 실수로 인한 지연교부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용역위탁 시 서면교부지연행위,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내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및 광고방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작 실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견적금액의 50% 수준에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판명되었음.

불공정한 콘텐츠 거래는 어느 법에 위배되나?

- 불공정한 콘텐츠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들
- 주요 규정

1. 불공정한 콘텐츠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들

콘텐츠 산업에서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은 일반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발생하는 통상적 유형으로서 거래대금의 지급관련 불공정 거래에 집중되는 한편, 콘텐츠관련 기술의 탈취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도 자주 발생하는 특징을 띠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행들은 우선 현행법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특히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제23조 제1항 4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콘텐츠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게 될 경우에는 동법 제3조의2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제재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주로 대기업이나 유통업자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중소기업 등 열등한 사업자에게 구매를 강제한다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런 관행들은 주로 하청, 하도급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래상 지위남용이 하도급 형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계약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사적자치를 보호한다는 법의 기본원칙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만으로 쉽게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계약의 이름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이 하도급법입니다. 즉 불공정한 콘텐츠 거래가 하도급계약의 형식으로 행해질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가 약관을 통해 행해 질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약관으로 보아서 해당 약관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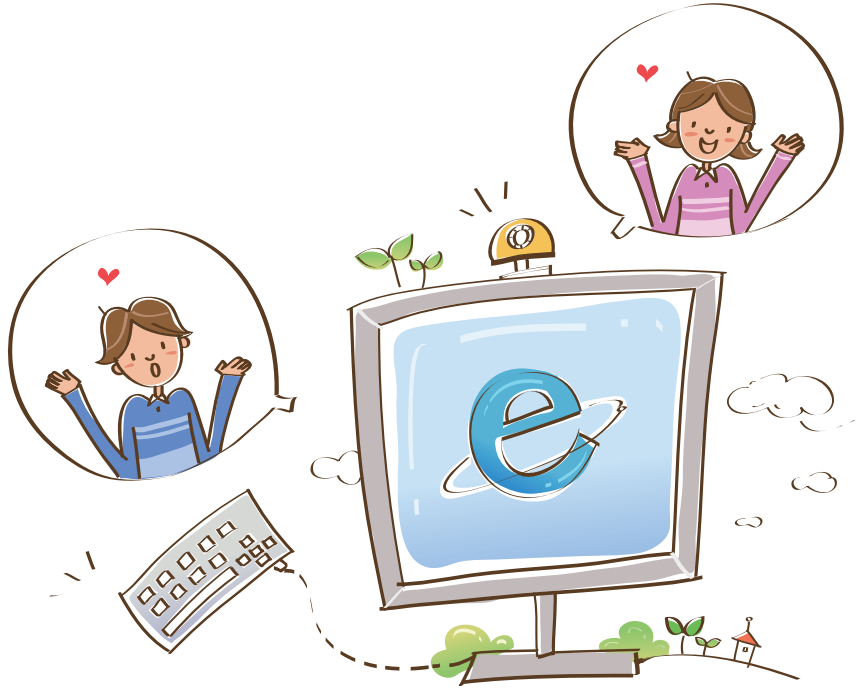

2. 주요 규정

(1)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공정거래법은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관행을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규정들을 보유하고 있음. 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가운데 사업활동방해(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거래상지위의 남용(제23조 제1항 제5호)이 주로 관련되며, 그 밖에도 중소기업 보호를 염두에 둔 제7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0조 등이 콘텐츠 산업의 중소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음.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대기업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유통과정에서 대기업이 자신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중소 제작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금의 지급지연, 부당한 감액요청, 현저히 낮은 대가의 거래요청 등 대금관련 불이익제공행위가 주를 이루며, 기타 기술편취 등 저작권의 침해행위도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됩니다.

구속조건부거래

대기업이 자기의 지배 내지 계열을 강화하거나 자기의 경쟁사업자의 힘을 약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특정한 상대방 또는 지역에서 거래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조건의 구속을 받는 중소기업은 사업활동상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고, 거래기회가 감소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의 범위를 점차 특정한 대기업에 예속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유형 및 기준 제7호). 단순히 콘텐츠 공급업자의 영업책임지역이나 거점을 정하는 경우까지 위법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엄격한 지역제한이나 고객의 요구에 의한 지역외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강제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원치 않는 거래를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유형 및 기준 제5호).

거래강제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대기업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에 종속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원하고 있지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끼워파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끼워팔기 이외에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유형 및 기준 제5호 다목)도 이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중소 하도급업체 또는 부품납품업체에 대해 자기제품 또는 자기가 지정한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거래상대방은 거래에 불응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지연지급, 거래량 감소 및 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가할 경우 위법한 것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경쟁사업자 배제

대기업이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배제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됩니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유형 및 기준 제3호). 공정거래법상 경쟁사업자 배제는 가격이라는 경쟁수단을 통한 배제행위에 중점을 두어 ①상품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부당염매(불당염매)와 ②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부당고가매입(불당고가매입)으로 구분됩니다.

고객유인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시장진출 자체는 자유경쟁의 견지로부터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대기업이 그 자본력, 경제력을 이용하여 정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가지고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고객에 대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서 규제대상에 포섭될 것입니다. 부당한 고객유인의 유형은 경쟁수단을 중심으로 ①부당한 이익제공에 의한 고객유인, ②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③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를 감안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고객유인의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경품 및 현상에 관하여는 특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경품류고시에서 별도로 규제됩니다.

사업활동의 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는 그동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에서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예컨대,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콘텐츠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또는 도산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경쟁회사에 넘겨 가격삭감 등에 활용하거나 경쟁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하여 경쟁하기도 하고, 전·후방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콘텐츠를 도용하여 그 시장에 참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중요한 기술과 기업정보의 유출 또는 거래고객을 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력을 유인·채용하거나 인력을 대량 스카우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곤란할 정도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금지대상이 될 것입니다.(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유형 및 기준 제8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규제됩니다(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사업자단체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명, 활동제한 그 밖의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것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능 활동의 제한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할 수 있습니다.

(2)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근거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하도급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 규범. 콘텐츠제작과정에서의 정보성과물에 대한 용역위탁거래가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법보다 콘텐츠 거래에 관한 사후적 제재관련성이 큼.

하도급거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데도, 대기업인 원사업자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 간에 호혜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채 원사업자(대기업)가 우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각종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등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에 따른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실거래에 만연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는 별도로 하도급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주된 의무사항

의무사항	개 요
서면의 교부 (제3조)	원사업자는 발주시에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지불기일 및 지불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음
서류의 작성. 보존 (제3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 용역위탁을 한 경우는 급부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음
하도급대금지급 (제13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하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에 대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 내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으로 정할 의무가 있음
지연이자 지불 (제13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일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지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일수에 따라 당해 미지불액에 20%를 곱한 액의 지연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있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주된 금지사항

금지사항	개 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제4조)	동종 또는 유사품의 가격 또는 시중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것
수령거부 등 금지(제8조)	주문한 상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
부당한 반품금지(제10조)	수취한 물품 등을 반품하는 것
하도급대금의 감액금지(제11조)	사전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하도급대금지불지연금지 (제13조 제1항)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한 지불기일까지 지불하지 않는 것
할인 곤란한 어음교부의 금지 (제13조제6항)	일반 금융기관에서 할인받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음을 교부하는 것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제12조)	원사업자가 지정한 물품, 용역을 강제적으로 구입, 이용시키는 것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의 제공요청 금지(제12조의2)	수급사업자로부터 금전, 노무의 제공 등을 강요하는 것
기술자료 제공금지(제12조의3) (2010.7.26 시행)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것
부당한 급부내용의 변경 및 부당한 재작업의 금지(제16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주문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수령 후에 재 작업을 시키는 것
보복조치의 금지(제19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린 것을 이유로 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해 수량삭감,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
유상지급원자재 등의 대가의 조기결제 금지(제12조)	유상으로 지급한 원자재의 대가를 당해 원자재를 이용한 급부에 관계한 하도급대금지불기일보다 이른 시기에 상계하거나 지급하게 하는 것

콘텐츠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 대금관련 주의사항
- 목적물 관련 불공정거래
- 거래상대방 관련 불공정거래
- 기술 관련 불공정거래

1. 대금관련 주의사항

(1)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의 거래 요청

●○● 관련 거래관행

콘텐츠 제작을 위탁하려는 사업자자(주로 방송사나 게임사 등 콘텐츠 유통사업자로서 이하 '위탁자'라 함)가 수탁자(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로서 이하 '수탁자'라 함)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내용의 용역 제공시 통상 지급되는 대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이나 대가,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원칙상 당사자들간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지만,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어 법령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규정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기반으로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 개시를 요청하는 것은 수탁자를 다른 콘텐츠제작사 등 수탁자들과 차별하여 취급하거나, 수탁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4호에 위배될 수 있으며, 특히 하도급거래시에 이처럼 현저히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위법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행위유형의 예시

법에 위반되는 경우

1. 수탁자가 콘텐츠 공급시에 새롭게 설비 투자와 인력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등 해당 콘텐츠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등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위탁자 등 거래상대방에 대해 콘텐츠 대가의 인상이나 적정한 책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정하는 경우
2. 제작자나 수탁자에게 단기의 납기를 설정함으로써 해당 콘텐츠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등도 대폭 증가하게 되어 수탁자가 대가의 인상을 요구하였음도 불구하고 소요되는 비용증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정하는 경우
3. 다량 내지 장기간의 역무의 위탁거래를 하는 것을 전제로 제작자나 수탁자에게 견적을 시키고 나서, 그 견적상의 대가는 콘텐츠를 소량 내지 단기간 밖에 거래하지 않는 경우처럼 책정하는 경우
4.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특정 제작자나 수탁자에 대해서만 다른 제작자나 수탁자의 대가에 비해 차별적으로 낮은 대가를 정하는 경우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1. 콘텐츠를 요청하는 자(위탁자)가 제시한 대가가 제작자의 견적상 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제작자 입장에서 위탁자에 의한 부당한 대금결정행위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의 요청 대가로 수탁하려고 하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 그것이 대가에 관한 협상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며 대가가 수급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 문제 되지 아니함.
2. 또한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의 위탁 거래를 요청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가 결정시 수탁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대가 결정 방법, 다른 수탁자의 대가에 비해 차별적인가 여부 등 결정 내용,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수급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대가의 결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됨.

(2) 대금의 감액요청

●○● 관련 거래관행

콘텐츠 제작의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이미 정해 놓은 대금을 나중에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제공한 역무의 내용이 위탁 시점에 결정한 조건에 못 미친 것을 이유로 하여 위탁자가 대금의 감액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대금의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줄 수 있으므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변경하지 않은 채 용역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계약 이외의 용역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도 사실상 대금을 감액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여러 부당한 이유를 들어 대금의 감액을 요청하는 것은 수탁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호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행위유형의 예시

법에 위반되는 경우

1. 수탁자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제공을 받은 후에 예산 부족 등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2. 제공받은 콘텐츠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검사 기준을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위탁 내용과 다르다는 것과 결함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3.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사양 등의 변경, 재작업 또는 추가적인 콘텐츠의 제공을 요청한 결과, 수탁자의 작업 양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작업량 증가분과 관련된 대금의 지급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에서 정한 대금 밖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설비 투자와 인원을 준비하는 등 위탁자에 대한 콘텐츠 제공의 준비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일부 위탁을 취소하고, 계약에서 정한 대금에서 위탁 거래 감소분에 관련된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1. 수탁자가 제공한 콘텐츠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위탁한 내용과 다른 콘텐츠가 제공되었을 경우, 납기에 늦었기 때문에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수탁자 측에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해당 사유의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콘텐츠가 제공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음.
2. 대금의 감액 요청이 대가에 관한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그 대금이 수급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 남용의 문제가 되지 않음.

●○● 하도급대금 감액의 경우

하도급 방식으로 콘텐츠를 거래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따라 전적으로 금지됩니다. 협찬금 등의 징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명목과 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행위도 금지되며,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경우

1. 콘텐츠 제작을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실제 위탁을 한 후에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콘텐츠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하거나 공급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깎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콘텐츠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기 내에 콘텐츠를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6.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콘텐츠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8.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달리 콘텐츠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콘텐츠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0.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11. 콘텐츠 공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 후 추가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당초의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3) 대금의 지급 지연

●○● 관련 거래관행

위탁사업자가 제공받은 콘텐츠의 대금에 대해 수탁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금의 지급지연행위는 위탁자 측의 수지 악화 및 내부 절차의 지연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계약에서 정한 만기일보다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콘텐츠의 대금지급 기일을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길게 설정하거나 만기일의 도래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위와 같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여러 부당한 이유를 들어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행위유형의 예시

법에 위반되는 경우

1. 회사의 지급절차의 지연 등을 이유로 하여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계약에서 정한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콘텐츠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서 콘텐츠 성과물의 제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과물의 검수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콘텐츠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서 대금은 해당 성과물을 위탁자가 실제로 사용한 후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경우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해당 성과물의 사용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크게 지연시키고,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하였을 경우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1. 콘텐츠 대금의 만기일이 길게 설정되는 경우라고 해도 대금에 대해 만기일까지 수탁자측의 자금 조달 비용을 감안한 대가로 협상을 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되지 않음

●○● 하도급대금 감액의 경우

하도급 방식을 통한 콘텐츠거래의 경우 대금은 목적물인 콘텐츠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발주한 콘텐츠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불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지연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 지급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사업자가 방송프로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방송일을 기산일로 하는 지급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당초의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콘텐츠의 수령일과 방송일과의 간격이 있게 되어 프로그램 제작 납입 후 60일을 넘어서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가 그러합니다.

자사의 사무처리지연과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서의 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동법에 위반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청구액을 집계하여 통지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가 지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된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목적물 관련 불공정거래

(1) 콘텐츠의 재작업 요청

●○● 관련 거래관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받은 콘텐츠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위탁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줄 가능성이 커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받은 콘텐츠의 재작업을 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은 수탁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호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행위유형의 예시

법에 위반되는 경우

1.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거래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사양 등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탁자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2. 콘텐츠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콘텐츠의 내용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을 받은 후에 수탁자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3. 제공받은 콘텐츠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검사 기준을 자의적으로 엄격히 적용하여 위탁 내용과 다르다거나 결함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사양 내지 검사 기준을 명확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사양 등과 다르다거나 결함이 있다는 것 등의 이유로 수탁자에게 재작업시키는 경우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1. 제공받은 콘텐츠의 내용이 위탁시점에 결정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작업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2. 또한 재작업을 위해 통상 필요한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등 수탁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 남용의 문제가 되지 않음

(2) 발주의 취소 또는 제작물의 수령거부

●○● 관련 거래관행

콘텐츠 거래에서 위탁자의 발주에 따라 제작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제작물의 완성 후에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것은 재사용이나 달리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탁자 등 콘텐츠 제작사에 매우 큰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 관련 규정

위탁자가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후에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발주취소나 수령거부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호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다만 수탁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발주서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였거나,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구체적 행위유형의 예시

법에 위반되는 경우

1. 위탁한 콘텐츠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수탁자가 납품·시공한 콘텐츠의 내용이 위탁한 것과 다른지를 판단하기 곤란한데도 위탁자(하도급거래시 원사업자 포함)가 콘텐츠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위탁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콘텐츠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콘텐츠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6. 원사업자가 여러 콘텐츠를 위탁하고 일부 콘텐츠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콘텐츠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콘텐츠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1. 발주내용과 다른 콘텐츠를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경우 수령의무 없음.
2. 수탁자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선고 신청 등 수탁자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에도 발주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4.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를 상당동안 지연하는 등으로 기간 내에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할 경우에도 발주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3) 부당반품의 금지

●○● 관련 거래관행

콘텐츠 거래를 하면서 발주에 따라 이미 완성된 콘텐츠 제작물을 위탁자가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콘텐츠는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반품조치 또한 결국 콘텐츠를 제작한 수탁자에게는 막대한 경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됩니다.

●○● 관련 규정

위탁자가 이미 제작한 콘텐츠를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4호 등에 따라 금지됩니다. 특히 하도급 콘텐츠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인 콘텐츠제작사로부터 콘텐츠의 납품을 받은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이 그 콘텐츠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할 경우에는 부당반품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배됩니다.

●○● 구체적 행위유형의 예시

법에 위반되는 경우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콘텐츠를 반품하는 행위
2.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콘텐츠를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콘텐츠를 발주자·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콘텐츠의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5.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거래상대방 관련 불공정거래

(1)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대한 상품 등의 구입요청

●○● 관련 거래관행

위탁자가 수탁자와의 콘텐츠 거래 관계를 이용하여 수탁자에 대해 자기 또는 관계회사가 취급하는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요청하면 수탁자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원하지 않더라도 혹시나 나중의 콘텐츠 위탁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마지못해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점에서 그 같은 요청도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 하는 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탁자가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또는 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행위유형의 예시

법에 위반되는 경우

1. 위탁 거래 담당자 등 콘텐츠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수탁자에 대해 제3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2. 수탁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3. 구입 의사가 없다는 표명이 있는 경우 또는 그 표명이 없어도 명백하게 구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재차 구매를 요청하거나 불필요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송부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대한 협찬금 등의 요청

●○● 관련 거래관행

위탁자가 행사, 광고 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협찬금 등으로 부담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대개 위탁자가 유통업체인 경우에 행해지는데, 대금감액의 요청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콘텐츠 거래에서는 협찬금 등이 판매촉진 활동으로 이어지는 등 직접적인 이익을 수탁자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사정으로 협찬금 등의 부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주기 쉬워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협찬금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호(거래상 제위남용 중 불이익제공 또는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행위유형의 예시

법에 위반되는 경우

① 협찬금 등의 부담 금액 및 산출 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수탁자에게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②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협찬금 등을 부담시키고 수탁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 위탁자의 결산대책 등 손익이 악화된 것을 이유로 협찬금 등의 부담을 요청하는 경우
- 상품납품 업체 등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협찬금 등의 부담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수탁자가 받는 직접적인 이익의 범위를 넘어 협찬금 등의 부담을 요청할 경우
-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위탁 거래를 한 경우 협찬금 등을 징수하는 것을 사전에 정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 거래량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찬금 등의 부담을 요청할 때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① 콘텐츠 유통업자가 상품납품업체에 협찬금 등의 부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납품상품의 판매 촉진으로 이어져 수탁자에게도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위반이 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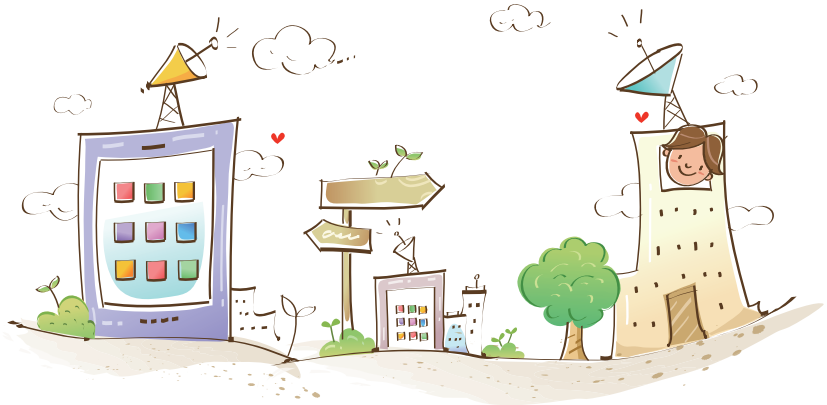

4. 기술 관련 불공정거래

(1) 콘텐츠에 관한 권리 등의 일방적 취급

●○● 관련 거래관행

콘텐츠의 거래나 용역하도급 위탁 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하며, 콘텐츠는 특허권, 의장권 등의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자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른 전용 가능한 성과물, 기술 등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와는 다른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위탁거래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해당 콘텐츠가 자기와의 위탁 거래 과정에서 획득된 것 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러한 수탁자의 권리를 자기에게 양도(사용권을 포함함)시키고, 해당 콘텐츠, 기술 등을 용역 위탁 거래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2차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주는 것으로 불공정거래에 해당됩니다.

●○● 관련 규정

콘텐츠가 거래대상이 되는 용역의 위탁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수탁자에 대해 그 권리를 자신이 일방적으로 취득하거나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행위유형의 예시

법에 위반되는 경우

콘텐츠의 권리 양도

1. 수탁자에게 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가 위탁자와의 위탁 거래 과정에서 얻어진 것 또는 위탁자의 비용 부담으로 작성되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당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를 위탁자에게 양도시키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2차 이용에 따른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하여 저작권 등의 권리를 위탁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이용 관리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2차 이용의 요청·제안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성과물 2차 이용 제한 등

1. 수탁자에게 권리가 발생하고 위탁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자신에게도 권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제로 수탁자와 일방적으로 해당 콘텐츠의 2차 사용 수익 배분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할 경우 또는 2차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탁자가 해당 콘텐츠가 위탁자와의 위탁 거래 과정에서 얻어진 것 또는 위탁자의 비용 부담으로 작성되어진 것을 이유로 수탁자 대해 일방적으로 해당 콘텐츠의 2차 사용 수익 배분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할 경우 또는 2차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위탁자가 제시하는 콘텐츠 제작의 대가 이외에 해당 콘텐츠의 2차 이용에 따른 수익 배분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콘텐츠의 제작을 수탁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이용을 관리하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2차 이용 요청·제안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대상 이외의 성과물 등의 권리의 양도 및 2차 이용 제한 등

1. 수탁자가 거래 대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콘텐츠 이외의 성과물 등에 대해 수탁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탁자가 위에서 소개한 경우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1. 콘텐츠에 관한 권리의 양도 또는 2차 이용의 제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불하고, 해당 대가를 포함한 형태로 대가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 문제가 되지 않음. 단, 이러한 경우에도 콘텐츠에 관한 권리의 양도 등에 대한 대가가 부당하게 낮은 경우와 콘텐츠에 관한 권리의 양도 등을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 등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때에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음.

(2) 기술자료 제공 강요행위

●○● 관련 거래관행

위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수탁자의 콘텐츠 관련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해당 기술자료를 자기나 제3자가 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하도급거래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인 콘텐츠 제작사에 대하여 기술자료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이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인 콘텐츠 제작사의 기술자료의 제공을 강요할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사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손해배상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지도록 되어 있으며, 2011. 6. 30.부터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소위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되어 원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구체적 행위유형의 예시

법에 위반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취득한 콘텐츠 관련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부록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자체 점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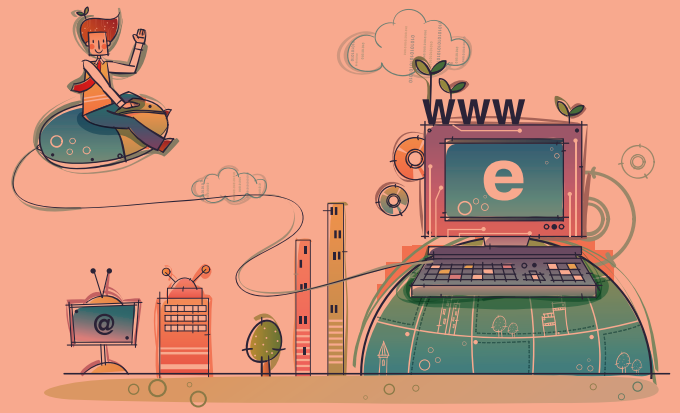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자체 점검사항

구 분	점검사항	비 고
계약체결 및 사업자선정 관련 사항	-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등 공정계약서를 채용하였는가? - 거래조건에 대한 명시 및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가? - 하도급 거래시 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였는가?	
거래조건 관련 사항	- 유사 콘텐츠에 대한 통상적인 거래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요구하였는가? - 검수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일이 있는가? - 검수기준 변경은 몇 차례 있었는가? - 검수기준 변경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대금관련 사항	- 대금지급을 지연하였는가? - 대금감액을 요청하였는가? - 대금지급지연이나 감액을 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 하도급계약의 경우 납품단가의 인상에 따른 제작자의 조정협의에 응하였는가? - 현금결제의 비중은 어떠한가?	
계약이행 관련 사항	- 계약당사자 일방으로 부터 특정 제품에 대한 물품구입 요청이 있었는가? (횟수 콘텐츠 계약과의 관련성, 해당 제품의 제작자와 요청자의 관계 등) -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의 제공 요청이 있었는가? (횟수, 경제상 이익제공의 사유 및 요청받은 사업자에 대한 반대급부 여부)	
납품관련 사항	- 지연이자의 연간요율(법정이자와의 차이)은 어떠한가? - 발주를 임의로 취소한 일이 있는가? (발주를 취소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나?) - 완성된 콘텐츠의 수령을 거부하였는가? (수령을 거부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나?) - 재작업을 요구한 일이 있었나? (재작업을 요구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나?) - 사후적인 거래정지나 수량삭감을 한 일이 있었나? (거래정지나 수량삭감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나?)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관련 사항	- 계약서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한 합의가 있었나? - 콘텐츠 관련 기술자료 등 저작권 제공을 요구하였나? - 콘텐츠 관련 기술자료를 유용한 일이 있었나? - 저작권 양도에 따른 수익배분 비율은 적절한가?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이 가이드라인은 콘텐츠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런 관행들이 법적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소개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거래 및 그에 따른 제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내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발 행 인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 행 일 2012년 11월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편집인쇄 사회문화사 Tel. 02-2263-0523

◆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주에 의해 수행한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사무국(☎ 02-2016-4108)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